

부산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75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규철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9. 30. 선고 2020가합128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C의 2020. 4. 28.자 망 F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1,164,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31,164,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 사이의 2020. 3. 2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2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밑에서 6행부터 3면 2행까지의 “라.”항 및 “마.”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20. 3. 22. 사망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가 3/7 지분, 자녀들인 C, D가 각 2/7 지분씩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마. 그러던 중 망인의 상속인 중 C은 2020. 4. 28.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620호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2020. 5. 29.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이하 이러한 C의 상속포기를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한편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와 D는 2020. 6. 8.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3면 6행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앞에 “이 사건 상속포기 및”을 추가한다.

○ 3면 6, 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1행부터 17행까지의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C의 이 사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고, C은 무자력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C의 이 사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C은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그 채권을 실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등 채무면탈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② D는 피고와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C과 D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31,164,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취하로 인하여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정, 판사 이재욱, 판사 박운삼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고유번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 구조 84.96㎡

토지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0095㎡

2. 부산광역시 남구 대 20631㎡

3. 부산광역시 남구 대 1861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934000분의 4960

끝.

